

송파구가족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

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,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가족센터 위탁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.

2023. 3. 27.

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

1. 위탁대상 시설현황

대상 시설	소재지	시설규모	직원수	주요시설
송파구 가족센터	• 건강가정지원사업: 양산로 5, 보건의소 2층	117.4㎡	22	사무실, 상담실, 교육장, 놀이치료실 등
	• 다문화가족지원사업: 마천로41길 12, 1층	330㎡	12	사무실, 상담실, 교육장, 언어발달교실 등

2. 위탁기간: 2023. 7. 1. ~ 2028. 6. 30.(5년)

※ 단, 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 등으로 인하여 조정·변경·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름

3. 위탁 사업내용

사무명	사무내용	비고
센터운영	·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	
가족관계	· 부모역할지원, 부부역할지원, 이혼전·후가족지원 · 다문화가족관계 향상지원,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·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 조성, 가족상담	
가족돌봄	· 가족역량강화지원(취약위기가족지원) · 다문화가족방문서비스	
가족생활	· 맞벌이가정 일·가정양립지원 ·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·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, 결혼이민자 취업지원	

사무명	사무내용	비고
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가족봉사단(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) · 공동육아나눔터(가족품앗이) · 다문화가족 교류·소통공간 운영 · 가족사랑의 날,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 · 결혼이민자정착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·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	
별도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서울가족학교 사업 ·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,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·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 ·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·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	

※ 세부수행사업은 가족사업안내(여성가족부)에 의해 매년 일부 변경될 수 있음.

4. 운영재원: 지원보조금(국비,지방비) 및 수탁기관 부담금

가. 건강가정지원사업 : 802,391천원(2023년 기준)

나. 다문화가족지원사업: 741,322천원(2023년 기준)

5.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

가. 신청자격
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을 원칙으로 함
- 시설운영에 문제가 없고 적정한 경우 타 시·도 소재지 법인도 가능
- 최소충족기준(법인의 공신력 상실 및 관리능력 부족)을 적용하여, 미달 시 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수탁자 선정 심의 상정 제외

- ① 『민법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·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
- ② 『고등교육법』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
- ③ 『사회복지사업법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- ④ 『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』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
- ⑤ 『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』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,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
- ⑥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

나. 신청 제외대상

- 대표 및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·학교
-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정부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 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·학교
(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·학교나 그 대표자 및 임원도 포함)

- 주된 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거나, 운영체 명의만 가지고 수탁받고자 하는 법인(단체)
- 영리 및 생계의 방편으로 운영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법인(단체)

다. 위탁조건

- 수탁기관은 건강가정기본법, 다문화가족지원법, 송파구가족센터 운영지침, 위·수탁계약서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위탁을 취소
- 현재 송파구가족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(센터장 제외)는 고용 승계하여야 함
- 보조금 이외의 추가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
-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·수탁 계약서에 의함

6.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접수

가. 공고기간: 2023. 3. 27.(월) ~ 4. 17.(월) 21일간

나. 접수기간: 2023. 4. 04.(화) ~ 4. 17.(월) ※토, 일요일, 공휴일 제외

다. 접수장소: 송파구청 여성보육과(본관 5층)

라. 접수방법: 근무시간 내 09:00~18:00 방문접수(우편, 택배, 인터넷접수 불가함)

마. 신청서 및 관련 서식 - 송파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

- 구비서류 본 서류와 요약분 각 10부씩(원본 1부, 사본 9부) 2권으로 제출
- 모든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함.

7. 제출 서류

가. 송파구 가족센터 수탁신청서 1부

나. 신청자격 입증서류 각 1부

【법인】 법인 등기부등본, 법인 정관 및 허가증,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, 법인 인감증명서

【단체】 단체등록증 및 회칙(규약)사본 각1부, 대표자 인감증명서

【학교】 등록증 사본, 학교의 회칙 또는 규약, 인감증명서

다. 법인(단체) 등의 조직 및 운영현황 관련서류

라. 최근 3년간(2020~2022) 법인 외부 점검(감독) 관련 서류

마. 대표자의 경력사항 및 센터장(내정자)의 자격 및 경력 증명 서류

바. 향후 5년간(2023~2028) 가족센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
사. 법인 등의 가족사업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

- 최근 3년간 건강가정 ·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실적, 수상 실적, 세입세출결산서

아. 자부담 승낙서, 서약서,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

자.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

차.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

8. 수탁체 선정방법 및 심사 결과 발표

가. 선정방법: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선정

- 수탁신청자는 심사일시(추후 통보)에 출석하여 센터 운영계획 등 설명(PPT, 10분이내) 및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함.(불참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)
- 심사기준: 심사평가표(3개영역: 공신력, 재정능력, 사업수행능력)에 의거 심사

심사항목	배점	심사내용
계	100	
공신력	40	사업수행의 적합성, 대표 등 운영의지 및 역량수준
재정능력	20	재원 확보수준 및 안정성, 회계 투명성 등
사업수행능력	40	인사관리계획,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

○ 심사방법

-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
- 동점의 경우 ① 사업수행능력 ② 법인의 공신력 ③ 재정능력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기관 선정하며, 모든 항목에서 동점일 경우 추첨에 의함.
- 위원별 점수를 총 합산하여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
- ※ 신청 접수 후 결격사유 조회결과 신청자격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전 부적격 처리

나. 선정결과 통지: 개별 통지 및 송파구 홈페이지(<http://www.songpa.go.kr>) 게재

9. 기타사항

가.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접수 후 열람 또는 추가 보완 불가함.

나.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선정을 무효로 함.

다. 신청하는 법인·단체는 모집공고 및 관계법규, 현지역건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, 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.

라. 신청접수현황, 위원회 인적사항 구성, 심사내용 및 위원별 배점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, 신청자는 이와 관련하여 송파구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
마. 수탁체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수탁조건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.

바. 운영에 의한 세부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송파구가족센터 위·수탁 약정서」에 따름.

사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여성보육과 (☎2147-2795)로 문의바라며 공고문의 해석 및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송파구의 해석에 따름.